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보건의료위기상황 대응〉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6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3. 28.
- (3) 회 부 일 : 2025. 3.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위기경보 발령,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등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및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는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다.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

<신 설>

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
려운 상황

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
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상황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
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
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¹⁾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²⁾ ③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④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 및 ⑤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재지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³⁾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⁴⁾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⁵⁾이 이어짐에 따라 의료공백 및 환자피해가 발생하였음.

- 김윤의원실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초과사망 등 환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⁶⁾

□ 정부도 이에 대비하여 2024년 2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였고, 상황이 악화되자 2024년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가동한 바 있음.⁷⁾

-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주요 94개 수련병원⁸⁾을 점검하여 당시에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며,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한 바 있음.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 2024.2.6.

4) KBS뉴스,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집단 사직 예고... 차질 시작, 2024.2.19.

5)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범의료계 휴진투쟁 시작에 불과...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돌입”, 2024.6.18.

6) 김윤의원실 보도자료, “김윤, 의료공백기간 초과사망 3,136명 발생 확인”, 2025.2.5.

김윤의원실 자료집, ‘의료대란 1년 - 정부의 무능함이 위협한 국민 생명’, 2025.3.30.

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2024.2.23.

8) 100개 병원 중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소 제외 점검

□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⁹⁾

□ 그러나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피해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공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부가 1년 이상 운영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952건 가운데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음.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¹⁰⁾

9)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됨.

10) 동아일보, ‘환자-가족 피해 지원하고 소송도 돕겠다더니... 정부, 의료공백 따른 피해 인정 0건’, 2025.2.21.

< 피해신고·지원센터 유형별 접수 현황('25.5.23. 기준) >

(단위: 건)

구분	총 상담 건수	피해신고					의료이용 불편상담	단순 질의	법률상담 지원
		소계	수술 지연	입원 지연	진료 차질	진료 거절			
누계	7,159	952	508	44	230	170	1,177	4,672	358
24.2월	783	343	256	15	39	33	206	145	89
3월	1,197	259	147	12	69	31	231	564	143
4월	685	101	42	7	25	27	115	412	57
5월	501	50	17	3	18	12	99	326	26
6월	560	70	21	1	30	18	133	335	22
7월	333	19	5	2	6	6	41	268	5
8월	278	31	6	2	13	10	46	190	11
9월	370	17	3	0	6	8	45	305	3
10월	327	13	5	1	6	1	48	264	2
11월	345	12	2	1	3	6	37	296	0
12월	406	11	0	0	5	6	41	354	0
25.1월	284	5	1	0	2	2	42	237	0
2월	334	3	1	0	0	2	39	292	0
3월	313	11	1	0	4	6	29	273	0
4월	275	7	1	0	4	2	14	254	0
5월	168	0	0	0	0	0	11	157	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피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피해 실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체계적인 환자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¹¹⁾

□ 개정안이 정의하는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는 환자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11) 김윤의원실 보도자료, '김윤, 의료대란 속 암수술 지연 피해 급증...의료대란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대표발의', 2025.3.30.

-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2012)¹²⁾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종에서 생존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정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³⁾에 근거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공의 근무상황 확인, 비상진료체계 구축, 한시적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의사 파업으로 인한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¹⁴⁾에 대하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회

12) Yun YH, Kim YA, Min YH, Park S, Won YJ, Kim DY, Choi IJ, Kim YW, Park SJ, Kim JH, Lee DH, Yoon SJ, Jeong SY, Noh DY, Heo DS. The influence of hospital volume and surgical treatment delay on long-term survival after cancer surgery. Ann Oncol. 2012 Oct;23(10):2731-2737. doi: 10.1093/annonc/mds101. Epub 2012 May 2. PMID: 22553194.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4) 정부는 2024.7.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을 통해 재난의 세부유형을 정하고, 각 세부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였는데, 「**사회재난 유형 중 하나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를 명시하였음. [참고자료]

재난관리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재난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때,¹⁵⁾¹⁶⁾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재난이 아니며,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에 따른 피해’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동법 제34조의5¹⁷⁾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¹⁸⁾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실태조사의 대상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 위기

15)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 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4.7.1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7.18.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관계부처합동 보도 설명자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재난이 아닙니다’, 2024.7.22.

중전 시행령상 재난 유형	쟁의행위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상 내용
전력 사고	노사갈등·파업 등 사회재난에 의한 전력시설 위기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으로 인한, 파업에 의한 원전 가동중단
보건의료 사고	병원노조의 집단파업으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의사의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 약국의 전국적인 집단 휴업으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고속철도 사고 도시철도 사고	(위기형태) 사회적물인가 크게 예상되는 것, (위기징후 목록) 노사협상 결렬, 파업결의
육상화물운송 사고	컨테이너화물자동차 등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운송 마비, BCT(시멘트) 등 특정산업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관련 화물의 운송 마비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시스템 개발·운영 등 금융전산 관련 업무 담당 인원의 파업·점거

상황에서 활동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또는 의료기관별 근무 현황 등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위기 상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장기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은 현행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¹⁹⁾ 특히 「의료법」에 따른 지도와 명령에 대해서는 위반 시 행정적·사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²⁰⁾ 다만, 개정안은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맞아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도와 명령’에 따른 소극적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부의

19)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0) 실제로 정부는 2024년 2월 전공의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응하여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음. 다만, 명령을 받은 의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위반 시 의료업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음.
- 동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피해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및 관련 개별법에서 개정안에서 제시된 보건의료 위기를 포함하여 재난의 정의와 재난별 주관기관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안전법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중보건위기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이 대응 주관 기관인 재난(예:감염병예방법(질병청), 테러방지법(국정원), 방사능 방재법(원안위))의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피해조사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피해 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피해조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동 개정안에서는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환자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위기상황 대응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실태조사나 의료진 협조는 이미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어 중복규정으로 불필요하며, 오히려 동 개정안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증가시키거나,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여, 의료진의 현장 이탈을 가속화 하거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국민의 진료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찬성)

-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군별 피해 및 자원현황을 명시하고, 대책 수립 및 시행에서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활용 계획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 동원에 있어 보건의료인의 협조 의무와 권리 보장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대비표 -

① 자연재난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자연재난 유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u>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u>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우주전파 재난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u>우주전파재난</u>
행안부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u>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u>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풍수해</u>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지진재해</u>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화산재해</u>
환경부	황사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조류 대발생(녹조 한정)	하천·호소 등의 <u>조류 대발생</u>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해수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로서 <u>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u> 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조수(潮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풍수해</u> 로서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산림청	산사태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u>산사태</u>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신 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어린이집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u>방송통신재난</u> (자연재난은 제외한다)
	<신 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u>연구실사고</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신 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u>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u>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외교부	<신 설>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외 발생 재난	해외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갹생보호시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난민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난민지원시설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행안부	<신 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u>승강기 사고</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정부중요시설 사고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u><삭 제></u> ※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행안부 경찰청	<신 설>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행안부 소방청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화재·위험물 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체부	<신 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신 설>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농식품부	가축질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저수지 사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수산물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업부	■ 가스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수습 사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전력 사고 ■ 전력생산용 댐 사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복지부	<신 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신 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보건의료 사고	<삭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복지부 질병청	감염병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환경부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미세먼지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식용수 사고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고용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국토부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도로터널 사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고속철도 사고 ■ 도시철도 사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항공기사고</u> , <u>경량항공기사고</u> 및 <u>초경량비행장치사고</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육상화물운송 사고	<삭 제>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해수부	<신 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호에 따른 <u>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u> 및 <u>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u>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항만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해수욕장의 안전사고</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해양 선박 사고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등 수난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수부 해경청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해양오염</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중기부	<신 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전통시장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여가부	<신 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u>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 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u>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금융위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u>금융기관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금융 전산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
원안위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방사능재난</u>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u>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u>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유산청	문화재 시설 사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른 <u>문화유산·보호구역·보호물 및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u>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6호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 행	개 정 안																																			
	재난 및 사고 유형	사회재난 유형																																			
		제7호에 따른 자연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화재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림청	<신 설>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불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해당 중앙행정 기관	<신 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 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 한다)로 인한 피해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국가핵심기반</th><th>주관기관</th></tr> </thead> <tbody> <tr> <td>에너지</td><td>▪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 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산업부</td></tr> <tr> <td>정보통신</td><td>▪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자·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 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 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 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 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td><td>과기 정통부 등</td></tr> <tr> <td>교통수송</td><td>▪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국토부 해수부</td></tr> <tr> <td>금융</td><td>▪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기재부 금융위</td></tr> <tr> <td>보건의료</td><td>▪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약사(藥事)·혈액관 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td><td>복지부</td></tr> <tr> <td>원자력</td><td>▪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산업부 원안위</td></tr> <tr> <td>환경</td><td>▪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환경부</td></tr> <tr> <td>식용수</td><td>▪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 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td><td>환경부</td></tr> <tr> <td>정부청사</td><td>▪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 산 등</td><td>행안부 등</td></tr> <tr> <td>문화재</td><td>▪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 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유산청</td></tr> <tr> <td>공동구</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td><td>국토부</td></tr> </tbody> </table>	분야	국가핵심기반	주관기관	에너지	▪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 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산업부	정보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자·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 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 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 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 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	과기 정통부 등	교통수송	▪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국토부 해수부	금융	▪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기재부 금융위	보건의료	▪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약사(藥事)·혈액관 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복지부	원자력	▪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산업부 원안위	환경	▪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환경부	식용수	▪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 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	환경부	정부청사	▪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 산 등	행안부 등	문화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 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유산청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분야	국가핵심기반	주관기관																																			
에너지	▪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 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산업부																																			
정보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자·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 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 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 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 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	과기 정통부 등																																			
교통수송	▪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국토부 해수부																																			
금융	▪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기재부 금융위																																			
보건의료	▪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약사(藥事)·혈액관 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 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복지부																																			
원자력	▪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산업부 원안위																																			
환경	▪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환경부																																			
식용수	▪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 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인적 자산 등	환경부																																			
정부청사	▪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 산 등	행안부 등																																			
문화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 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유산청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	국토부																																			